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며,
각 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, 갱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 19 (COVID-19)」
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
- 장기요양기관(입소, 재가)용 -

2020. 2. 20.

h·well
국민건강보험

목 차

제1장. 수립배경

1. 목적 ····· 1

2. 기본방향 ····· 1

ㅇ (참고 1) 코로나 19(COVID-19) 대응원칙 ····· 3

ㅇ (참고 2) 코로나 19(COVID-19) 사례정의 ····· 4

제2장.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

상황 1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····· 5

상황 2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··· 12

– 노인요양시설 방문자가 의사환자인 경우

–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경우

상황 3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····· 16

상황 4. (재가)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·····24

상황 5. (재가)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··· 29

– 의사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–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한 경우

상황 6. (재가)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·····32

<별첨> 용어 정리 ····· 36

<붙임 1~7> ····· 42

제1장. 수립 배경

1. 목 적

○ 최근 코로나19(COVID-19)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함으로써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함

* 정부에서는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인 경우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내림('20.1.29., 고용노동부)

< 발생가능 케이스(6종) >

Case 1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
Case 2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
Case 3. (입소)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
Case 4. (재가)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Case 5. (재가)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
Case 6. (재가)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2. 기본 방향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, 방문 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,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함

-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(중국, 싱가포르, 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)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
-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(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)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

※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736(2020.2.18.) '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'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함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(방문인 포함)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

※ 지자체(보건소)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,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

-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(격리대상자 포함)가 발생하는 경우에 첨부된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

※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

※ 감염증 환자(격리대상자 포함)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 · 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 착용 및 이동 금지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*의 부족이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

* 마스크(N95, KF94에 준함), 비누, 손세정제, 체온계 등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,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,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,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에 협조·지원 요청할 것을 권고

- 지자체 및 보건소,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

참고1 코로나 19(COVID-19) 대응원칙

○ **(법적 근거)**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 19(COVID-19)는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'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'을 적용하여 대응

○ **(대응 방향)**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

- 코로나 19(COVID-19)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,
-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

※ 코로나 19(COVID-19) 관련 정보

현재까지 알려진 정보(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사항, '20.2.12.)

○ (병원체) 2019 novel Coronavirus

○ (감염원)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

○ (전파경로) 동물 → 사람 → 사람 전파 추정

사람간 전파는 비말(호흡기 분비물) 전파 추정

○ (전염력) R_0*=1.4~2.5

(SARS의 경우 3,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.6, 원내 전파 4)

○ (잠복기) 1~14일 추정

○ (임상증상)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), 폐렴

○ (위중도) 중국 폐렴 보고사례 중 25%정도가 중증/위중 환자

* 고위험군은 고연령, 기저질환자

○ (치명률) 중국 약 2.1%**

* 중국 전체 2.1%, 후베이성 내 3.1%, 우한시 내 4.9%, 후베이성 외 지역(성) 0.16%†

*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(2019-nCoV)

** World Health Organization (WHO), https://www.who.int/news-room/detail/23-01-2020-statement-on-the-meeting-of-the-international-health-regulations-(2005)-emergency-committee-regarding-the-outbreak-of-novel-coronavirus-(2019-ncov)?from=singlemessage&isappinstalled=0](2005),

†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(2020.2.4.)

참고2 코로나 19 (COVID-19) 사례정의

□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

○ **확진환자(Confirmed case)**
-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  ·진단검사 : 코로나19(COVID-19) 유전자(PCR) 검사

○ **의사환자(Suspected case)**

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(COVID-19)이 의심되는 자
※ 코로나-19(COVID-19)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

○ **접촉자(WHO 예시)**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

※ 발열 : 37.5 ℃ 이상

< 신고 대상 >

1. 최근 14일 이내에 **중국** 방문 +
2. 최근 14일 이내에 **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**한 자 +

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 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3. **의사의 소견에 따라** 코로나19(COVID-19)**이 의심되는 자**
코로나19(COVID-19)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)

제2장.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

상황 1 [입소]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

< 대응 개요 >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확진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자가격리	→ 증상 발생	의사환자로 분류, 자가격리 (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)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] 노인요양시설의 방문자가 확진환자인 경우

- **접촉자 : ○○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김△△, 수급자 이△△**
- **접촉일시 : 2020. 2. 3. 15:30, ○○노인요양시설 건강실 401호**
  ※ 방문자 ○○○은 2020. 2. 4. 09시경 확진환자로 판정(관할 보건소)
- **노출기간 : 2020. 2. 3. ~ 2. 4. (2일간)**
- **시설규모(자체 건물) … 지상 4층**
  - **1층(사무실, 원장실, 프로그램실, 물리치료실), 2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201~210), 3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301~310), 4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401~410) 등**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 사항 >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**접촉자 발생 사실**을 알린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**검사·조사에 적극 협조**하고, **지시에 따른다.**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**지시, 권고**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폐쇄(전체 또는 부분)한다.

※ 폐쇄 후 소독 : ① (지자체장) 최초 방역소독 → ② (대표자(시설장) 2~3회 자체소독 → ③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노인요양시설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(1~14일) 동안 해당 기관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**다른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**를 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○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.

◈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

※ WHO 접촉자 예시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○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 확진환자가 다녀갔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(관할 역학조사관, 즉각대응팀)을 출동시킨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요양보호사 김△△, 수급자 이△△를 즉시 자가 격리 조치한다.

※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'격리통지서'를 발부(붙임 2)

-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○ 요양보호사 김△△과 수급자 이△△는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-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김△△과 수급자 이△△가 격리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
○ 요양보호사 김△△과 수급자 이△△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-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  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  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3.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

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확진환자가 방문하여 접촉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

►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
- 즉시 유선보고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► 보호자에게 SMS, 유선전화 등 면회·외출 제한 안내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접촉한 직원과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,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
② 보건소 조치 이행

<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>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,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한다.

- 요양보호사 김△△, 수급자 이△△과 같은 층(공간)에서 생활했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, 위생관리 및 증상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.

- 요양보호사 김△△과 수급자 이△△는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한다.

※ 김△△, 이△△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,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.

< 방역소독 >

<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>

◈ (정의)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,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, 경로,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

◈ (관련법령)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, 병리검사, 격리, 검역, 소독, 면역(예방접종), 감염원 조사로 진행

-「감염병예방법」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및 제48조(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)에 따라 지자체장(보건소 방역팀)은 소독 조치를 시행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며, 실시 방법·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-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,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.

※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(방역팀)에서 실시, 2·3회는 대표자(시설장)가 외부업체 의뢰 또는 자체소독 실시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방역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.

- **(소독제)**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(70~90%) 등 환경소독제
- **(소독대상)** 출입문 손잡이, 화장실, 침실, 복도, 침대난간 등
- **(주의사항)** 접촉한 종사자와 수급자의 물컵, 수건 등 만지지 않기
- **(환기)** 최소 6회, 1일 최소 2시간 이상

4. 장기요양기관 조치

< 노인요양시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>

① **(부분폐쇄)** 확진환자가 다녀간 4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401~410호)만 폐쇄하는 경우

- 대표자(시설장)는 즉시 4층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,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, 다른 층에 임시 침실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 서비스를 수행한다.

  ※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 부착(붙임 4)

- 대표자(시설장)은 자가 격리된 종사자 및 수급자 규모에 따라 전원 대책을 마련한다. … 생활수칙 안내문 부착(붙임 1)

② **(전체폐쇄)**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

- 대표자(시설장)는 즉시 노인요양시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,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일시적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.

  ※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폐쇄 안내문 부착(붙임 5)

-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에 대한 격리조치, 이송방법 · 장소 · 기관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 · 권고에 따른다.

- 전 종사자는 자가 격리하며, 보건복지부 대응지침*에 준하여 처리한다.

  *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508(2020.2.4.) "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」 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시달

  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> **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*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>
> 1.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
>
> **가. 일시적 폐쇄**
>
> 나.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

<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전원은 지자체장(보건소장) 지시에 따름 >

1 수급자 전원조치에 관한 기본 원칙

◈ 수급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자지체장(보건소장)의 조치·권고에 따라 진행한다.

◈ 노인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전원 결정사항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즉시 통보한다.

◈ 수급자(보호자)의 의사결정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유형별 세부 방안에 따라 전원을 추진한다.

- (자택 귀가) 보호자가 수급자를 직접 돌볼 수 있을 경우
- (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 이송) 수급자(보호자)가 자가격리 환경조성이 어려운 경우
- (시설 내 자체 격리) 시설에서 자체 격리가 필요한 경우

2 유형별 전원조치 방안

○ **자택으로 귀가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 보호자 수발이 가능하고, 수급자(보호자)가 동의하면 자택으로 귀가 조치를 실시한다.
-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.
- 수급자 자택 관할 보건소에서는 수급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.
- 보건소는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수급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•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○ **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에 따라 이송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.
-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.

○ **시설 내 자체 격리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 의심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격리를 실시한다.
- 자가 격리 및 전원 조치로 인한 공실을 활용하여 전체 1인실로 사용한다.
- 보건소로부터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지원받아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수발 및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(보호자)의 결정에 따라 입소유지 또는 전원 조치하며,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즉시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송한다.

5.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폐쇄된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·권고에 따라 전원된 수급자를 재입소 조치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.

◆ **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,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, 격리,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**

상황 2 [입소]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

< 대응 개요 >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의사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접촉자 조사 (시·도) 명단 확정	→ 증상 발생	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**진료**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 1] 노인요양시설 방문자가 의사환자인 경우

- **접촉자 : ○○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박△△, 수급자 김△△**
- **접촉일시 : 2020. 2. 5. 16:00 … ○○노인요양시설 1층 사무실, 요양실 109호**
  ※ 시설 방문자(의사환자)의 가족이 2. 6. 10:20, 확진환자로 판정
- **시설규모(자체 건물) … 지상 2층**
  - **1층(사무실, 원장실, 요양실 101~120호), 2층(프로그램실, 식당, 간호사실)**

[사례 2]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경우

- **접촉자 : ○○노인요양시설 1층 종사자 및 수급자**
- **접촉일시 : 2020. 2. 10. 16:00 … ○○노인요양시설 1층 요양실**
  ※ 요양보호사 홍◇◇는 2. 11. 호흡기 증상 발생으로 의사환자로 판정
- **시설규모(자체 건물) … 지상 2층**
  - **1층(사무실, 원장실, 요양실 101~120호), 2층(프로그램실, 식당, 간호사실)**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사항 >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**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** 알린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**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**하고, 지시에 따른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노인요양시설 내 **방역소독**을 실시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○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.

◈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

※ WHO 접촉자 예시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○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(관할 역학조사관)을 출동시킨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사례별로 조치한다.

- **(증상이 없는 경우)** 종사자는 정상 근무, 수급자는 정상 생활한다.

  ※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 착용

- **(증상이 있는 경우)** 종사자 및 수급자는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.

  • 판정 전까지는 자가 격리한다.

  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  •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는다.

3.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

1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했음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

►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
- 긴급한 경우 즉시 유선보고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► 보호자에게 SMS, 유선전화 등 면회·외출 제한 안내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,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
2 보건소 조치 이행

<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>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한다.

- 대표자(시설장)는 의사환자와 접촉 또는 같은 층(공간)에서 생활했던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조사하고, 위생관리 및 증상 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.
- 의사환자와 접촉한 수급자 및 종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한다.

※ 박△△, 홍◇◇, 김△△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, 지시에 따른다.

< 방역소독 >

<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>

◈ (정의)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,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, 경로,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

◈ (관련법령)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, 병리검사, 격리, 검역, 소독, 면역(예방접종), 감염원 조사로 진행
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및 제48조(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)에 따라 지자체장(보건소 방역팀)은 소독 조치를 시행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자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.

- **(소독제)**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(70~90%) 등 환경소독제
- **(소독대상)** 출입문 손잡이, 화장실, 침실, 복도, 침대난간 등
- **(주의사항)** 접촉한 종사자와 수급자의 물컵, 수건 등 만지지 않기
- **(환기)** 최소 6회, 1일 최소 2시간 이상

◆ **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,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, 격리,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**

상황 3 [입소]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

< 대 응 개 요 >

◆ 확진환자 관리

	<최초 인지>		<치 료>
확진환자	(보건소) 즉시 이송조치 '보건소 전용구급차'	→	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음압병상) 입원, 치료

◆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확진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자가격리	→ 증상 발생	의사환자로 분류, 자가격리 (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)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 1]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경우

- 확진환자 : 요양보호사 김○○
- 발생일시 : 2020. 2. 4. 9:00 … 보건소 통보일시
- 발병원인 : 2020. 2. 3. 15:30 확진환자인 지인과 저녁식사
- 노출기간 : 2020. 2. 3. ~ 2. 4. (2일간)
  ※ 요양보호사 김○○은 2층에 입소한 수급자 다수에게 서비스 제공
- 시설규모(자체 건물) … 지상 3층
  - 1층(사무실, 원장실, 프로그램실, 물리치료실), 2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201~210), 3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301~310)

[사례 2] 수급자가 입소 후 확진환자가 된 경우

- 확진환자 : 수급자 이△△
- 발생일시 : 2020. 2. 13. 15:00 … 보건소 통보일시
- 발병원인 : 2020. 2. 11. 18:30 확진환자와 접촉한 아들과 식사
- 노출기간 : 2020. 2. 11. ~ 2. 13. (3일간)
  ※ 수급자 이△△은 2층에 입소 후 종사자 다수와 접촉
- 시설규모(자체 건물) … 지상 3층
  - 1층(사무실, 원장실, 프로그램실, 물리치료실), 2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201~210), 3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301~310)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 사항 >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**확진환자 발생 사실**을 알린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**검사·조사에 적극 협조**하고, **지시에 따른다**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**지시, 권고**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폐쇄(전체 또는 부분)한다.

※ 폐쇄 후 소독 : ① (지자체장) 최초 방역소독 → ② (대표자(시설장) 2~3회 자체소독 → ③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장기요양기관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(1~14일) 동안 해당 기관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**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**를 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확진자 심층역학조사

○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.

○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.

-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
-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·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

◈ 접촉자 조사

○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-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

○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.

※ WHO 접촉자 예시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○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김○○, 수급자 이△△가 확진환자임을 알리고,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(관할 역학조사관, 즉각대응팀)을 출동시킨다.

1 확진환자(요양보호사 김○○, 수급자 이△△) 조치

○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.

< 이송조치>

◈ 보건소 구급차*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
*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
-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,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* 착용
* 전신보호복(덧신포함),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, 보안경
- 구급차 운전자는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

2 접촉자(종사자 및 수급자 등)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2층 종사자 및 수급자를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한다.

※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'격리통지서'를 발부(붙임 2)

-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. …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-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종사자 및 수급자가 격리 기간 중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
○ 종사자 및 수급자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-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  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  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3.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

1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김○○, 수급자 이△△가 확진환자로 통보받은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

►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  - 즉시 유선보고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► 보호자에게 SMS, 유선전화 등 면회·외출 제한 안내

2 보건소 조치 이행

<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>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,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한다.

- 대표자(시설장)는 확진환자인 요양보호사 김○○, 수급자 이△△과 같은 층(공간)에 있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위생관리 및 증상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.
- 확진환자 요양보호사 김○○, 수급자 이△△은 자가 격리(독립된 공간) 상태에서 대기한다.

※ 격리된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,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.

< 방역소독 >

<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>

◈ (정의)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,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, 경로,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

◈ (관련법령)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, 병리검사, 격리, 검역, 소독, 면역(예방접종), 감염원 조사로 진행
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및 제48조(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)에 따라 지자체장(보건소 방역팀)은 소독 조치를 시행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며, 실시 방법·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-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,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.

※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(방역팀)에서 실시, 2·3회는 대표자(시설장)가 외부업체 의뢰 또는 자체소독 실시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방역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.

- **(소독제)**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(70~90%) 등 환경소독제
- **(소독대상)** 출입문 손잡이, 화장실, 침실, 복도, 침대난간 등
- **(주의사항)** 확진 종사자의 물컵, 수건 등 만지지 않기
- **(환기)** 최소 6회, 1일 최소 2시간 이상

4. 장기요양기관 조치

< 노인요양시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>

① **(부분폐쇄)** 확진환자가 다녀간 2층(요양보호사실, 건강실 201~210호)만 폐쇄하는 경우

- 대표자(시설장)는 즉시 2층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,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, 다른 층에 임시 침실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 서비스를 수행한다.

  ※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 부착(붙임 4)

- 대표자(시설장)은 자가 격리된 종사자 및 수급자 규모에 따라 전원 대책을 마련한다. … 생활수칙 안내문 부착(붙임 1)

② **(전체폐쇄)**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

- 대표자(시설장)는 즉시 노인요양시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,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일시적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.

  ※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폐쇄 안내문 부착(붙임 5)

-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에 대한 격리조치, 이송방법 · 장소 · 기관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 · 권고에 따른다.
- 전 종사자는 자가 격리하며, 보건복지부 대응지침*에 준하여 처리한다.

  *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508(2020.2.4.) "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」 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시달

> **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*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> 1.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
>
> **가. 일시적 폐쇄**
>
> 나.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

<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전원은 지자체장(보건소장) 지시에 따름 >

1 수급자 전원조치에 관한 기본 원칙

◈ 수급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자지체장(보건소장)의 조치·권고에 따라 진행한다.

◈ 노인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전원 결정사항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즉시 통보한다.

◈ 수급자(보호자)의 의사결정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유형별 세부 방안에 따라 전원을 추진한다.

- (자택 귀가) 보호자가 수급자를 직접 돌볼 수 있을 경우
- (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 이송) 수급자(보호자)가 자가격리 환경조성이 어려운 경우
- (시설 내 자체 격리) 시설에서 자체 격리가 필요한 경우

2 유형별 전원조치 방안

○ **자택으로 귀가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코로나19 검가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 보호자 수발이 가능하고, 수급자(보호자)가 동의하면 자택으로 귀가조치를 실시한다.
-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.
- 수급자 자택 관할 보건소에서는 수급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.
- 보건소는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수급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•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  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  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○ **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에 따라 이송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.
-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.

○ **시설 내 자체 격리 조치**

- 대표자(시설장)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 의심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격리를 실시한다.
- 자가 격리 및 전원 조치로 인한 공실을 활용하여 전체 1인실로 사용한다.
- 보건소로부터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지원받아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수발 및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(보호자)의 결정에 따라 입소유지 또는 전원 조치하며,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즉시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송한다.

5.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폐쇄된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지시·권고에 따라 전원된 수급자를 재입소 조치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.

◆ **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,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, 격리,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**

상황 4 [재가]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< 대 응 개 요 >

◆ 확진환자 관리

	<최초 인지>		<치 료>
확진환자	(보건소) 즉시 이송조치 '보건소 전용구급차'	→	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음압병상) 입원, 치료

◆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확진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자가격리	→ 증상 발생	의사환자로 분류, 자가격리 (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)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]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- 확진환자 : ○○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김○○
- 발생일시 : 2020. 2. 15. 11:00 … 보건소 통보일시
- 발병원인 : 2020. 2. 11. 12:00 확진환자인 지인과 식사
- 노출기간 : 2020. 2. 11. ~ 2. 15.(5일간)

※ 요양보호사 김○○은 수급자 김△△(3등급, 독거)에게 방문요양(180분) 제공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 사항 >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 해당 종사자 및** 수급자(보호자)에게 **확진환자 발생 사실**을 알린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**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**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**검사·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적극 협조**하고, **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.**

◈ **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는**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**지시, 권고**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를 하고,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 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확진자 심층역학조사

○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.

○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.

-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
-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·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

◈ 접촉자 조사

○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-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

○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.

※ WHO 접촉자 예시
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① 확진환자(요양보호사 김○○) 조치

○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.

< 이송조치>

◈ 보건소 구급차*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

*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

-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,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* 착용

* 전신보호복(덧신포함),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, 보안경

- 구급차 운전자는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

② 접촉자(수급자 김△△)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요양보호사 김○○이 확진환자임을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수급자 김△△을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안내한다.

※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'격리통지서'를 발부(붙임 2)

-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○ 수급자 김△△은 자가 격리 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. …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-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 김△△이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
○ 수급자 김△△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•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
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3.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

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요양보호사 김○○이 확진환자인 사실을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.

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

►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→ 장기요양기관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→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

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
(즉시 유선보고)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,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.

② 종사자에 대한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김○○이 확진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.

3 보건소 조치 이행

○ 수급자 김△△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,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하게 한다.

○ 수급자 김△△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,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.

○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< 방역소독 >

<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>

◈ (정의)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,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, 경로,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

◈ (관련법령)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, 병리검사, 격리, 검역, 소독, 면역(예방접종), 감염원 조사로 진행
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, 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 및 제48조(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)에 따라 지자체장(보건소 방역팀)은 소독 조치를 시행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수급자 가정에 방역소독 실시하도록 진행한다.

-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,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.

상황 5 [재가]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

< 대응 개요 >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의사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접촉자 조사 (시·도) 명단 확정	→ 증상 발생	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**진료**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 1] 의사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- **접촉자 : ○○재가센터 수급자 권△△(독거노인)**
- **접촉일시 : 2020. 2. 1. ~ 2. 2. … 요양보호사 최△△가 방문요양서비스(12:00~16:00)**
  ※ 요양보호사 최△△은 2020. 2. 3. 호흡기 증상 발생 등으로 의사환자로 판정

[사례 2]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

- **접촉자 : ○○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박○○**
  ※ 수급자 김△△는 중국 거주하는 자녀 방문(2. 3. ~ 2. 5.) 후 의사환자로 판정(2.10.)
- **접촉일시/장소 : 2020. 2. 5. ~ 2. 9. … 수급자 김△△에게 방문요양서비스(09:00~12:00)**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사항 >

◈ **대표자(시설장)**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**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**한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**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**검사·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적극 협조**하고, **지시에 따르도록 안내**한다.

◈ **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**는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**지시, 권고**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**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**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**를 하고, **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** 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○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 하고,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.

◈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

※ WHO 접촉자 예시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○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환자인 종사자 및 수급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(관할 역학조사관)을 출동시킨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사례별로 조치한다.

- **(증상이 없는 경우)**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, 수급자에게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.

  ※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실천 방법 및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 착용하도록 교육

- **(증상이 있는 경우)** 종사자 및 수급자는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.

  • 판정 전까지는 자가 격리한다. …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  •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는다.

3.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

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에게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> **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**
> ►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→ 장기요양기관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→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> **(즉시 유선보고)**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,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투입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.

② 종사자에 대한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종사자가 의사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.

③ 보건소 조치 이행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,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한다.

○ 종사자 및 수급자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, 지시에 따른다.

◆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,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, 격리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

상황 6 [재가]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

< 대 응 개 요 >

◆ 확진환자 관리

	<최초 인지>		<치 료>
확진환자	(보건소) 즉시 이송조치 '보건소 전용구급차'	→	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음압병상) 입원, 치료

◆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

	<증상발생 전>		<증상발생 후>
확진환자의 접촉자	(보건소) 자가격리	→ 증상 발생	의사환자로 분류, 자가격리 (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)

※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

[사례]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

- 확진환자 : 수급자 안△△
- 발생일시 : 2020. 2. 10. 11:30 … 보건소 통보 일시
- 발병원인 : 2020. 1. 28. 중국 거주 자녀가 명절을 맞아 방문
- 노출기간 : 2020. 2. 1. ~ 2. 9.(9일간)

※ ○○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민○○가 2020. 2. 1. ~ 2. 9.까지 방문요양(180분) 제공

1. 단계별 대응절차

< 주요 사항 >

◈ 대표자(시설장)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**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한다.**

◈ 대표자(시설장)는 **즉시** 종사자에게 **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을** 알린다.

◈ **종사자 및 수급자(보호자)는** 지자체장(보건소장)의 **지시, 권고**에 따라 자가 격리 하도록 한다.

◈ **대표자(시설장)는** 해당 종사자에 대해 **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**를 하고,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

2. 접촉당사자 조치

< 접촉자 조사의 개요 >

◈ 확진자 심층역학조사

○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.

○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.

-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
-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·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

◈ 접촉자 조사

○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(즉각대응팀 등)가 결정한다.

-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,
-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,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(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)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즉시 '접촉자 관리'를 실시한다

○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.

※ WHO 접촉자 예시
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○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보호사 민○○이 확진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(관할 역학조사관)을 출동시킨다.

① 확진환자(수급자 안△△) 조치

○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.

< 이송조치>

◈ 보건소 구급차*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

*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

-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,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* 착용

* 전신보호복(덧신포함),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, 장갑, 보안경

- 구급차 운전자는 KF94(N95)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

2 접촉자(요양보호사 민○○)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민○○에게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확진환자로 결정한 수급자 안△△과 접촉한 사실을 알리고,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조치한다. …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'격리통지서' 발부(붙임 2)

-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○ 요양보호사 민○○은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.

-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민○○이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
○ 요양보호사 민○○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.

격리해제 : 코로나19(COVID-19) 검사 '음성' 판정

•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

-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
-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

3. 종사자 조치

⑴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 서비스 중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종사자에게 알리고,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< 상황보고 체계 유지 >

► 대표자(시설장) → 보건소, 관할 운영센터(휴일시 당직실 033-736-4114)로 보고 …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

- 즉시 유선보고 ☞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(붙임7)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,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.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.

⑵ 종사자에 대한 조치

○ 대표자(시설장)는 요양보호사 민○○이 의사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.

⑶ 보건소 조치 이행

○ 요양보호사 민○○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,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하게 한다.

○ 요양보호사 민○○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,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.

○ 자가 격리의 방법·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.

※ 생활수칙 안내문(붙임 1)

별첨 용어 정리

1. 자가격리

○ 격리장소 바깥 외출을 금지하는 상태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, 매일 자가모니터링*하고 접촉한일로부터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증상 확인

* 자가모니터링: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,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유선 연락할 때 본인의 증상을 알려주는 것

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
○ **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.** ○ **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.** -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,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. 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. ※ 공용 화장실, 세면대를 사용한다면, 사용 후 소독(락스 등 가정용소독제)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 ○ **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.** ○ **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** - 불가피한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. ○ **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세요.** -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-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○ **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.** 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 -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-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, 기침,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.

2. 접촉자

○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,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여 감염을 받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나 동물

○ 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 하였으나, 현재는 접촉자로 일원화

※ WHO 접촉자 예시

- 의료처치 관련 노출(보호복 착용여부 고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(같은 교실)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와 자동차, 기차,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
- 코로나 19(COVID-19) 환자의 동거인

3. 자가격리 해제

○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

- (의사환자) 시·도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
- (확진환자)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·도에 통보
- (보건소)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

○ 격리해제 기준

- (의사환자) 코로나 19(COVID-19) 검사 음성일 경우
- (확진환자)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,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

4. 코로나 19(COVID-19) 유전자검사(PCR)

○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(RNA)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

5. 검체 채취

○ 코로나19(COVID-19) 확인을 위한 검체의 종류로는 ▲가래, ▲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, ▲비강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, ▲ 양성판정 이후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사 시에는 혈액, 대변·소변을 채취 …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

그림1. 가래 채취 방법

<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>

<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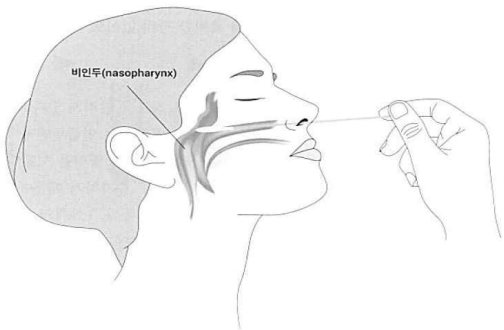

출처: ADAM, 인플루엔자,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(TEPIK)

그림2. 상기도 채취 방법

6.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

○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·통제·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

○ 질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·감염내과·예방의학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

7. 선별진료소

○ 응급실 밖이나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 설치된 진료시설로, 코로나19(COVID-19) 의심 환자가 찾는 첫 번째 장소로 의심환자의 사전 역학조사와 진찰이 이뤄지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음

○ 선별진료소 현황

– 정부(질병관리본부) 코로나19(COVID-19) 사이트*에 매일 업데이트

* 사이트 주소: http://www.mohw.go.kr

○ 해당 사이트에서 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도 조회 가능

8.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

○ 평시(관심단계)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(주의, 경계, 심각단계) 시, 신종 감염병(SARS, MERS, 신종인플루엔자 등)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시설

○ 음압격리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,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

9. 음압병상

○ 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설치한 병실

○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함

10. 방역

○ 보건복지부장관,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,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

-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 폐쇄,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,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
-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
-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・입원시키는 것
-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을 폐기하는 것
  (일반인이 사용・접수・이동・세척・버리는 것을 금지)
- 오염된 장소를 소독
- 오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

11. 소독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'별표 6'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

- 감염병환자・간호인・접촉자가 사용한 의류, 침구, 주방기구, 서적 등을 ▲소각, ▲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, ▲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, ▲석탄산 3% 수용액, 크레졸액 3% 수용액, 대한약전 규격 포르마린 등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소독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, ▲의류・침구・용구・도서・서류나 그 밖이 물건으로 다른 소독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

12. 이소프로판올

○ 알코올은 에탄올, 이소프로판올, 메탄올이 있는데,

○ 소독용으로는 에탄올, 이소프로판올이 사용되며,

○ 이소프로판올은 에탄올보다 독성이 강함

13. N95 마스크

○ 보통 마스크와는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'호흡기'에 속함

○ 호흡기는 미국 국립보건원(CDC)의 하부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규제를 받으며, 차단의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

○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N95 이상의 호흡기를 착용할 것을 권장

○ '95'는 공기에 떠다니는 1.0 마이크로미터(㎛) 이상 크기의 미세과립의 95% 이상을 걸러 준다는 뜻

○ N은 'Not resistant to oil'의 약자로 기름 성분에 대해 저항성이 없는 것을 말함(기름 성분이 있는 곳에서는 R(Resistant to oil)이나 P(oil-Proof)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)

14. KF94 마스크

○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마스크

○ 평균 0.4μm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% 차단

○ 황사, 미세먼지는 물론 전염성 질병까지 차단 가능

○ 다만, 차단율이 높을 수록 숨쉬기 어려우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는 호흡량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함

붙임 1 자가 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

질병관리본부
KCDC

2020.2.4.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- **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**
  -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 • 외부인 방문 제한
- **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**
- **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**
  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  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
- **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**
- **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**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

발열(37.5℃ 이상)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폐렴

붙임 2 **격리통지서**

격리통지서

성 명		생년월일	
격리 구분 ☐ 자가 ☐ 시설 ☐ 병원	격리 기간		
	격리 장소	격리 장소	
		주소	

귀하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'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' 또는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'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'에 해당하여 '**격리대상**'임을 통지합니다.

※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202 년 월 일

OOO 보건소장

(관인생략)

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

질병관리본부 KCDC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!

[올바른 기침예절]

발행일 2019.11.5.

붙임 4 장기요양기관 부분폐쇄 안내문

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(입소자) 중

코로나 19(COVID-19) 확진환자가

발생함에 따라 ○층에서 처리하던

업무를 ○층으로 옮겨서 처리하오니

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2. 4.

○○ 장기요양기관 대표

붙임 5 장기요양기관 폐쇄 안내문

장기요양기관 종사자(입소자) 중

코로나 19(COVID-19) 확진환자가

발생함에 따라 사옥을 폐쇄하오니

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외부인 출입 통제

2020. 2. 4.

○○ 장기요양기관 대표

붙임 6 감염병 발생 신고서(입소시설)

서식 2 **감염병발생신고서**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8서식] <개정 2019. 11. 22.>

감염병 발생 신고서

※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수신자: [ ]질병관리본부장 [ ]_____보건소장

[환자의 인적사항]

성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
(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)	성별 [ ]남 [ ]여
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주소	
[ ]거주지 불명 [ ]신원 미상	직업

[감염병명]

제1급	[ ]에볼라바이러스병	[ ]마버그열	[ ]라싸열	[ ]크리미안콩고출혈열
	[ ]남아메리카출혈열	[ ]리프트밸리열	[ ]두창	[ ]페스트
	[ ]탄저	[ ]보툴리눔독소증	[ ]야토병	
	[ ]신종감염병증후군(증상 및 징후:)			
	[ ]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		[ ]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	
	[ ]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		[ ]신종인플루엔자	[ ]디프테리아
제2급	[ ]수두(水痘)	[ ]홍역(紅疫)	[ ]콜레라	[ ]장티푸스
	[ ]파라티푸스	[ ]세균성이질	[ ]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	
	[ ]A형간염	[ ]백일해(百日咳)	[ ]유행성이하선염(流行性耳下腺炎)	
	[ ]풍진(風疹, [ ]선천성 풍진 [ ]후천성 풍진)		[ ]폴리오	[ ]수막구균 감염증
	[ ]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		[ ]폐렴구균 감염증	[ ]한센병
	[ ]성홍열	[ ]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		
	[ ]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(CRE) 감염증			
제3급	[ ]파상풍(破傷風)	[ ]B형간염	[ ]일본뇌염	[ ]C형간염
	[ ]말라리아	[ ]레지오넬라증	[ ]비브리오패혈증	[ ]발진티푸스
	[ ]발진열(發疹熱)	[ ]쓰쓰가무시증	[ ]렙토스피라증	[ ]브루셀라증
	[ ]공수병(恐水病)	[ ]신증후군출혈열(腎症候群出血熱)		
	[ ]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			
	[ ]황열	[ ]뎅기열	[ ]큐열(Q熱)	[ ]웨스트나일열
	[ ]라임병	[ ]진드기매개뇌염	[ ]유비저(類鼻疽)	[ ]치쿤구니야열
	[ ]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		[ ]지카바이러스 감염증	

[감염병 발생정보]

발병일	년 월 일	진단일	년 월 일	신고일	년 월 일
확진검사결과 [ ]양성 [ ]음성 [ ]검사 진행중 [ ]검사 미실시			입원여부	[ ]외래 [ ]입원 [ ]그 밖의 경우	
환자 등 분류 [ ]환자 [ ]의사환자 [ ]병원체보유자 [ ]그 밖의 경우					
비고(특이사항)					
사망여부 [ ]생존 [ ]사망					

[신고의료기관 등]

요양기관번호	요양기관명
주소	전화번호
진단 의사 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신고기관장 성명

[보건소 보고정보]

국적(외국인만 해당합니다)	
환자의 소속기관명	환자의 소속기관 주소
추정 감염지역 [ ]국내	
[ ]국외(국가명: / 체류기간: - / 입국일: 년 월 일)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붙임 7 전국 보건소 현황

□ 상세 현황

2020. 1월말 기준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서울	강남구	강남구보건소	02-3423-7200
	강동구	강동구보건소	02-3425-8500
	강북구	강북구보건소	02-901-7600
	강서구	강서구보건소	02-2600-5800
	관악구	관악구보건소	02-879-7114
	광진구	광진구보건소	02-450-1500
	구로구	구로구보건소	02-860-2600
	금천구	금천구보건소	02-2627-2423
	노원구	노원구보건소	02-2116-4501
	도봉구	도봉구보건소	02-2091-4600
	동대문구	동대문구보건소	02-2127-5465
	동작구	동작구보건소	02-820-1439
	마포구	마포구보건소	02-3153-9020
	서대문구	서대문구보건소	02-330-1801
서울	서초구	서초구보건소	02-2155-8114
	성동구	성동구보건소	02-2286-7011
	성북구	성북구보건소	02-2241-1749
	송파구	송파구보건소	02-2147-3420
	양천구	양천구보건소	02-2620-4340
	영등포구	영등포구보건소	02-2670-3114
	용산구	용산구보건소	02-2199-8350
	은평구	은평구보건소	02-351-8152
	종로구	종로구보건소	02-2148-3514
	중구	중구보건소	02-3396-6317
	중랑구	중랑구보건소	02-2094-0710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부산	강서구	강서구보건소	051-970-3415
	금정구	금정구보건소	051-519-5051
	기장군	기장군보건소	051-709-4791
	남구	남구보건소	051-607-6460
	동구	동구보건소	051-440-6500
	동래구	동래구보건소	051-555-4000
	부산진구	부산진구보건소	051-645-4000
	북구	북구보건소	051-309-4500
	사상구	사상구보건소	051-310-4791
	사하구	사하구보건소	051-220-5701
	서구	서구보건소	051-242-4000
	수영구	수영구보건소	051-752-4000
	연제구	연제구보건소	051-665-4871
	영도구	영도구보건소	051-419-4000
	중구	중구보건소	051-600-4741
	해운대구	해운대구보건소	051-749-7501
대구	남구	남구보건소	053-664-3610
	달서구	달서구보건소	053-667-5616
	달성군	달성군 보건소	053-668-3333
	동구	동구보건소	053-662-3201
	북구	북구보건소	053-665-3208
	서구	서구보건소	053-663-3111
	수성구	수성구보건소	053-666-3111
	중구	중구보건소	053-661-3121
인천	강화군	강화군보건소	032-930-4013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인천	계양구	계양구보건소	032-430-7801
	남동구	남동구보건소	032-464-4001
	동구	동구보건소	032-762-4001
	미추홀구	미추홀구보건소	032-880-5310
	부평구	부평구보건소	032-509-8200
	서구	서구보건소	032-560-5000
	연수구	연수구보건소	032-749-8000
	옹진군	옹진군보건소	032-899-3110
	중구	중구보건소	032-760-6010
광주	광산구	광산구보건소	062-960-8733
	남구	남구보건소	062-607-4311
	동구	동구보건소	062-608-3261
	북구	북구보건소	062-410-8961
	서구	서구보건소	062-350-4108
대전	대덕구	대덕구보건소	042-608-5499
	동구	동구보건소	042-251-6112
	서구	서구보건소	042-288-4500
	유성구	유성구보건소	042-611-5011
	중구	중구보건소	042-580-2700
울산	남구	남구보건소	052-226-2805
	동구	동구보건소	052-209-4080
	북구	북구보건소	052-289-3450
	울주군	울주군보건소	052-204-2798
	중구	중구보건소	052-290-4300
세종	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	044-301-2000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경기	가평군	가평군보건소	031-582-2488
	고양시	고양시 덕양구보건소	031-8075-4013
	고양시	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	031-8075-4083
	고양시	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	031-8075-4160
	과천시	과천시보건소	02-2150-3800
	광명시	광명시보건소	02-2680-2862
	광주시	광주시보건소	031-760-2110
	구리시	구리시보건소	031-550-8681
	군포시	군포시보건소	031-461-5464
	김포시	김포시보건소	031-980-5011
	남양주시	남양주보건소	031-590-2552
	남양주시	남양주풍양보건소	031-590-4771
	동두천시	동두천시보건소	031-860-3419
경기	부천시	부천시보건소	032-625-4183
	성남시	성남시 분당구보건소	031-729-3990
	성남시	성남시 수정구보건소	031-729-3870
	성남시	성남시 중원구보건소	031-729-3930
	수원시	수원시 권선구보건소	031-228-6716
	수원시	수원시 영통구보건소	031-228-8716
	수원시	수원시 장안구보건소	031-228-5802
	수원시	수원시 팔달구보건소	031-228-7716
	시흥시	시흥시보건소	031-310-5811
	안산시	안산시 단원보건소	031-481-6341
	안산시	안산시 상록수보건소	031-481-5909
	안성시	안성시보건소	031-678-5710
	안양시	안양시 동안구보건소	031-8045-4472
	안양시	안양시 만안구보건소	031-8045-3472
	양주시	양주시보건소	031-8082-7106
	양평군	양평군보건소	031-770-3505
	여주시	여주시보건소	031-887-3601
	오산시	오산시보건소	031-8036-6025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경기	용인시	용인시 기흥구보건소	031-324-6911
	용인시	용인시 수지구보건소	031-324-8924
	용인시	용인시 처인구보건소	031-324-4911
	의왕시	의왕시보건소	031-345-3541
	의정부시	의정부시보건소	031-870-6001
	이천시	이천시보건소	031-635-2400
	파주시	파주시보건소	031-940-4800
	평택시	평택시 송탄보건소	031-8024-6615
	평택시	평택시 평택보건소	031-8024-5553
	포천시	포천시보건소	031-538-3600
	하남시	하남시보건소	031-790-6555
	화성시	화성시보건소	031-369-2551
강원	강릉시	강릉시보건소	033-660-3010
	고성군	고성군보건소	033-681-4000
	동해시	동해시보건소	033-530-2401
	삼척시	삼척시보건소	033-572-4000
	속초시	속초시보건소	033-631-4000
	양구군	양구군보건소	033-481-2400
	양양군	양양군보건소	033-670-2550
강원	영월군	영월군보건소	033-370-2550
	원주시	원주시보건소	033-737-4011
	인제군	인제군보건소	033-461-2425
	정선군	정선군보건소	033-562-4000
	철원군	철원군보건소	033-450-5550
	춘천시	춘천시보건소	033-250-3550
	태백시	태백시보건소	033-552-4000
	홍천군	홍천군보건소	033-430-4000
	횡성군	횡성군보건소	033-340-5612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충북	괴산군	괴산군보건소	043-832-4000
	단양군	단양군보건소	043-420-3201
	보은군	보은군보건소	043-540-5600
	영동군	영동군보건소	043-740-5600
	옥천군	옥천군보건소	043-730-2114
	음성군	음성군보건소	043-872-2136
	제천시	제천시보건소	043-641-2720
	증평군	증평군보건소	043-835-4220
	진천군	진천군보건소	043-539-7771
	청주시	청주시 상당보건소	043-201-3116
충북	청주시	청주시 서원보건소	043-201-3217
	청주시	청주시 청원보건소	043-201-3421
	청주시	청주시 흥덕보건소	043-201-3300
	충주시	충주시보건소	043-850-3412
충남	계룡시	계룡시보건소	042-840-3567
	공주시	공주시보건소	041-840-8755
	금산군	금산군보건소	041-750-4311
	논산시	논산시보건소	041-746-8011
	당진시	당진시보건소	041-360-6005
	보령시	보령시보건소	041-930-0900
	부여군	부여군보건소	041-835-8600
	서산시	서산시보건소	041-667-6550
	서천군	서천군보건소	041-950-6700
	아산시	아산시보건소	041-537-3403
	예산군	예산군보건소	041-339-8993
	천안시	천안시 동남구보건소	041-521-2650
	천안시	천안시 서북구보건소	041-521-2552
	홍성군	홍성군보건소	041-632-2588
전북	고창군	고창군보건소	063-560-8714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전북	군산시	군산시보건소	063-462-4923
	김제시	김제시보건소	063-540-1300
	남원시	남원시보건소	063-625-4000
	부안군	부안군보건소	063-584-1261
	완주군	완주군보건소	063-290-3008
	익산시	익산시보건소	063-859-4802
	전주시	전주시 보건소	063-281-6200
	정읍시	정읍시보건소	063-539-6072
	진안군	진안군보건소	063-430-8560
전남	강진군	강진군보건소	061-430-3533
	고흥군	고흥군보건소	061-830-5561
	광양시	광양시보건소	061-797-4004
	나주시	나주시보건소	061-339-2171
	담양군	담양군보건소	061-383-4000
	목포시	목포시보건소	061-277-4000
	무안군	무안군보건소	061-450-5014
	보성군	보성군보건소	061-853-4000
	순천시	순천시보건소	061-749-6905
	신안군	신안군보건소	061-243-8550
	여수시	여수시보건소	061-683-4000
전남	영광군	영광군보건소	061-350-5552
	영암군	영암군보건소	061-470-6525
	장성군	장성군보건소	061-390-7550
	장흥군	장흥군보건소	061-860-0550
	진도군	진도군보건소	061-540-6005
	함평군	함평군보건소	061-320-2405
	해남군	해남군보건소	061-531-3738
	화순군	화순군보건소	061-379-5305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경북	경산시	경산시보건소	053-810-6363
	경주시	경주시보건소	054-779-8573
	고령군	고령군보건소	054-954-1300
	구미시	구미시 구미보건소	054-480-4000
	구미시	구미시 선산보건소	054-480-4151
	군위군	군위군보건소	054-380-7401
	김천시	김천시보건소	054-433-4000
	문경시	문경시보건소	054-555-2033
	봉화군	봉화군보건소	054-673-4000
	상주시	상주시보건소	054-535-4000
	성주군	성주군보건소	054-933-2400
	안동시	안동시보건소	054-855-5986
	영덕군	영덕군보건소	054-730-6823
경북	영양군	영양군보건소	054-680-5114
	영주시	영주시보건소	054-631-4000
	영천시	영천시보건소	054-330-7860
	예천군	예천군보건소	054-650-8011
	울진군	울진군보건소	054-789-5000
	의성군	의성군보건소	054-830-6660
	청도군	청도군보건소	054-370-6470
	칠곡군	칠곡군보건소	054-973-4000
	포항시	포항시 남구보건소	054-270-4004
	포항시	포항시 북구보건소	054-270-4114

시도	시군구	보건기관명	대표전화번호
경남	거제시	거제시보건소	055-639-6200
	거창군	거창군보건소	055-940-8310
	고성군	고성군보건소	055-670-4001
	김해시	김해시보건소	055-330-4451
	남해군	남해군보건소	055-860-8701
	밀양시	밀양시보건소	055-359-7020
	사천시	사천시보건소	055-831-3560
	양산시	양산시보건소	055-380-4000
	의령군	의령군보건소	055-570-4010
	진주시	진주시보건소	055-741-4000
경남	창녕군	창녕군보건소	055-530-6202
	창원시	창원시 마산보건소	055-245-4000
	창원시	창원시 진해보건소	055-225-6101
	창원시	창원시 창원보건소	055-225-4000
	통영시	통영시보건소	055-650-6010
	하동군	하동군보건소	055-882-4000
	함안군	함안군보건소	055-580-3101
	함양군	함양군보건소	055-960-5331
	합천군	합천군보건소	055-930-3681
제주	서귀포시	서귀포시 동부보건소	064-760-6111
	서귀포시	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	064-760-6001
	서귀포시	서귀포시 서부보건소	064-760-6251
	제주시	제주시 동부보건소	064-728-4180
	제주시	제주시 서부보건소	064-728-4111
	제주시	제주시 제주보건소	064-728-4100